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허위매물 광고 및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 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등 자동차매매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16 신설)

나.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

3조의17부터 제13조의19 신설)

다. 보증의 종류(안 제13조의20 신설)

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포함 사항(안 제13조의21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2부터 제13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공제규정
3. 사업계획서
4. 수지계산서
5.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13(공제조합의 등기) ①법 제68조의14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 이사의 대표직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15(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8조의14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16(감독 등) ①법 제68조의14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17(운영위원회) ①법 제68조의15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18(조합의 운영규정)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19(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20(보증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①법 제68조의17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1(보증 및 공제의 규정) ①법 제68조의18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68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2(출자증권의 명의 기재 변경) ①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제13조의23(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4(조합의 업무위탁)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5(재무건전성 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6(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30.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 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 19 관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 「기술보증기금법」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2.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담보부사채신탁법」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8. 「보험업법」
19. 「부동산투자회사법」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1. 「산림조합법」
22. 「상호저축은행법」
23. 「새마을금고법」
24. 「선박투자회사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2. 「외국인투자 촉진법」
 33. 「외국환거래법」
 3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은행법」
 3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0. 「전자금융거래법」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3. 「주택법」
 4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9. 「한국투자공사법」
 50. 제1호부터 제49호까지의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
- 별표 2 제2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	500	750	1,000
주.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게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	500	750	1,0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u> <u>①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정관</u> <u>2. 공제규정</u> <u>3. 사업계획서</u> <u>4. 수지계산서</u> <u>5. 창립총회의 회의록</u> <u>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13(공제조합의 등기) ①</u> <u>법 제68조의14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목적</u> <u>2. 명칭</u> <u>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 <u>4. 정관 인가 연월일</u> <u>5. 총출자금</u>

<신 설>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 이사의 대표직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 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 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신 설>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의15(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8조의14제5항에 따른 공제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
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조의16(감독 등) ①법 제68조
의14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운
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

<신 설>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
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에
산 또는 임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17(운영위원회) ①법 제6
8조의15에 따른 운영위원회(이
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
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
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보험·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
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

<신 설>

<신 설>

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

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⑨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

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18(조합의 운영규정) 조

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

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19(운영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

<신 설>

<신 설>

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13조의20(보증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 ①법 제68조의 17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1(보증 및 공제의 규정)

①법 제68조의18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68조의18제2항에 따른

<신 설>

<신 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2(출자증권의 명의 기재 변경) ①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제13조의23(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

<신 설>

<신 설>

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
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
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24(조합의 업무위탁) 조
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
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5(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
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
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
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
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
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
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
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신 설>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
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
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
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6(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
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
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
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
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
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
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되, 대차
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